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김경호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4. 3.24.)으로 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및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출자·출연법인에 대한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제 1항제6호)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「지방공기업법」제77조의3는 2014. 3. 24.일 삭제됨.

○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「성주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」을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으로 개정(안 제17조④항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시행령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○ 기　　타 : 조례안예고(2019. 5. 8 ~ 2019. 5. 17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

감사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·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